

순천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공개강좌운영규정

제정 1996. 3. 1. 개정 1997. 11. 3.
전문개정 1999.8. 28. 개정 2003. 2. 28.
개정 2003. 12. 8. 개정 2006. 2. 24.
개정 2006. 2. 28. 개정 2013. 7. 17.
개정 2016. 2. 12. 개정 2019. 12.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 제39조에 의하여 이 지역 각급 지도자의 관리능력을 계발하고 산학협동 도모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영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개설하는 공개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개강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및 최고관리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공개강좌운영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및 주임교수의 구성)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 2. 24.)

② 이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06. 2. 24.)

제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사정
2. 교과과정
3. 납입금 징수액 책정
4. 공개강좌 세입·세출의 기본방침
5. 운영규정의 제·개정안
6. 수강생 포상 및 징계
7. 기타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모집과 전형

제6조(모집인원) ① 최고지도자과정의 모집인원은 30명 내외, 최고관리자과정의 모집인원은 60명 내외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①최고지도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이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최고관리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및 공사기업체의 간부·임직원
2.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중견공무원 및 각 군의 장교
3. 각급 의회의원, 정당·사회단체의 간부
4.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사업자
5. 기타 대학원장이 이 과정의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전형방법) 이 과정의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 의한다.

제4장 등록·수강기간·수업·휴학 등

제10조(등록) 이 과정에 입학할 허가 받은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기간) 이 과정의 수강기간은 2개 학기로 하되, 제1학기는 3월에, 제2학기는 9월에 개강한다.

제1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정규수업, 특별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업) 이 과정의 수업은 야간에 한다.

제14조(강의) ① 과정의 강의는 대학원장이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 강의담당교수는 강의 10일전까지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① 매월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상 결석자는 경고한다.

② 공무상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사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제1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8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회에 한하며 휴학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03. 12. 8.>

제5장 연구보고서·평가·수료 및 증명서 발급

제18조(연구보고서) ① 수강생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연구분야 및 주제는 수강생이 선정하여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제19조(성적평가) 이 과정의 성적평가는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출석상황·자치활

동·연구보고서·기타 학습과제 또는 필요시에 시행하는 시험성적 등을 포함한다.
제20조(수료의 인정) ①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은 과정의 이수를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 출석일수에 미달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수료를 유보하며 다음 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제21조(증명서 발급) 수강생 및 수료(예정)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상훈 및 징계

제22조(포상)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포상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연구보고서 작성자
3. 재학기간중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4. 재학중 출석 상황이 우수한 자
5. 이 과정 또는 순천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

제23조(징계)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수강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2. 학사운영이나 자치활동에 지장이 초래하는 자
3. 출석미달을 이유로 1개 학기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제7장 자치활동

제24조(자치활동) ①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원우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재정과 운영

제25조(재정) 이 과정의 재정은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예산운영) ① 수강료는 대학원 학생 납입금의 한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순천대학교 기성회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27조(강의료 및 교재연구비 등) 이 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료, 교재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대학원학칙과 경영행정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6. 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대학원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7. 1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8)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07.17.)

경영대원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또는 최고관리자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경영 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인)

(제21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07.17.)

경행대원 제 호

수 강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과 정 명

수 강 기 간

학적원부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대 조 자

* 대조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제21조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07.17.)

경행대원 제 호

수료 (예정)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과정명

수강기간

학적원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장(학위) ○○○ (인)

대 조 자

* 대조자인이 없으면 무효임